

# 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I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2275호
2. 발 의 자 : 박순규 의원
3. 발의일자 : 2021. 4. 1.
4. 회부일자 : 2021. 4. 6.

### II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신고의 접수·처리 조문내용과 별첨 신고서 피신고자의 정보 형식이 맞지 않아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의 조문 내용을 준용하여 개정 하려는 것임.

### III. 주요내용

1. 불법하도급 신고 접수 요건을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(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)의 조문을 준용하여 변경함.  
(안 제4조제1항)

### IV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 :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
2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3. 기 타 : 해당없음

## 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### 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4월 1일 박순규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275호로 발의되어 2021년 4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에 규정된 불법하도급에 대한 신고 접수·처리에 관한 내용 중 피신고자의 접수요건(제4조제1항제2호)과 별지 제1호 서식의 피신고자 정보형식이 맞지 않아, 이를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
### 2. 주요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불법하도급 신고 접수요건과 관련하여 현재 동 조례 제4조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‘신고자의 실명,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이 확인 가능한 경우’를 ‘신고자의 성명·주소’로 하고,  
제2호의 ‘피신고자의 성명·주소 및 불법하도급 거래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첨부된 경우’를 ‘피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)’와 ‘위반행위의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’로 각각 제2호와 제3호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현재 동 조례 제4조제1항제2호는 피신고자의 경우 성명과 주소를 접수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접수를 위한 <불법하도급 신고서>(별지 제1호 서식)에는 주소가 생략되어 있는바,  
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별지 서식에 없는 내용을 조례 본문에서 삭제하고 상위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조문과 서식의 통일성 및 법

적 안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1)

현행	「서울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 【별지 제1호 서식】					
<p>제4조(신고의 접수·처리) ① 제3조의 신고에 대한 접수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신고자의 실명,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확인 가능한 경우</p> <p>2. 피신고자의 성명·주소 및 불법하도급 거래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첨부된 경우</p>	접수번호			접수일	2010년 월 일	
	불법하도급 유형	내용	일괄하도급(A) <input type="checkbox"/> 재하도급(B)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C) <input type="checkbox"/>			
		거래자	건설업자간(a) <input type="checkbox"/> 건설업자 - 무등록업자간(b) <input type="checkbox"/> 무등록업자간(c) <input type="checkbox"/>			
	단 계	1단계(1) <input type="checkbox"/> 2단계(2) <input type="checkbox"/> 3단계(3) <input type="checkbox"/> 4단계이상(4) <input type="checkbox"/>				
	신 고 자	성 명		생년월일		
		주 소				
		연 락 처		E-mail		
	신 고 내 용					
	<p>○ 발주자부터 신고된 하도급 단계까지의 도급 구조를 표시 및 페이지를 참조하여 간단히 수기로 작성</p> <p>○ 신고내용 기록(용지 별첨 가능)</p>					
	현 장 명					
현 장 위 치						
원 도 급 업 체	업체명(대표자)					
	현장대리인(연락처)					
불 법 하 도 급 을 한 업 체	업체명(대표자)					
	현장대리인(연락처)					
불 법 하 도 급 을 받 은 업 체	업체명(대표자)					
	현장대리인(연락처)					
발 주 기 관 명	<input type="checkbox"/> 본청 <input type="checkbox"/> 교육지원청 <input type="checkbox"/> 교육시설관리본부 <input type="checkbox"/> 각급학교					
기 타 사 항						

○ 다만 동 조례안의 개정에 따라 현행과 달리 접수요건에서 신고자의 경우 연락처가 제외되고, 피신고자의 경우 주소가 제외되는바,

해당 요건만으로 불법하도급에 대한 신고 및 위법확인, 그리고 포상금 지급 등 일련의 행정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효율성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○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별지의 서식과 일치시키기 위해 신고자의 경우 연락처를, 피신고자의 경우 주소와 연락처를 각각 추가하고, 별지 서

1)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조문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음.

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(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) ① 법 제22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.

1. 신고자의 성명·주소
  2. 피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)
  3.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
- ② ~ ④ (생략)

식의 피신고자 부분에 업체주소를 추가하는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6136,2021.4.13.).

- 그러나 별지 서식에는 신고자의 경우 성명, 주소, 연락처 이외에도 생년월일과 E-mail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, 피신고자의 경우 현행 조례의 서식에도 주소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,

동 조례안이 불법하도급 신고접수에 있어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면 굳이 서식에 있는 모든 내용을 조문에 규정하기 위해 수정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사료됩니다.<sup>2)</sup>

- 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칠 것입니다.

---

2) 동 조례가 제정된 이래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아직 단 1건도 없음.